

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

명령받을 사 람	성 명		생 년 월 일	
	주 소	(전화 :)		
지하시설물	명 칭			
	위 치			
안전 조치 명령 사유				
안 전 조 치	안전조치 사항			
	안전조치 방법			
	안전조치 기한			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가 소유·점유·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하오니 이행하시고, 첨부한 안전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
가
다

국토교통부장관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